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희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021-62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26일

발 의 자 : 김현희, 정정희, 박성호, 강선영
이종숙, 황영호, 송순효, 이충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에 “마을미디어”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조)
- 나.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 다. 입법예고: 2021. 5. 27. ~ 6. 1.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한다.

제9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을 말한다.</u></p> |
| <p>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10. (생략)</p> | <p>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 ----- ----- ----- ----- -----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지원</u></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p>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